

2026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요강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모집은 제외)



강서대학교 입학관리과

<http://admission.gangseo.ac.kr> / TEL(02)2600-2446 / FAX(02)2600-2469

I.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면접시험	실기시험		
인문사회	신학과	100% (1,000점)	—	1. 입학정원 2% 이내의 모집 대상자 : 5명 ① 영주교포(영주권소유) 자녀 ② 국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③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④ 기타재외국민의 자녀 2. 입학정원 제한 없는 모집 대상자 ⑤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⑥ 북한이탈주민	
	G2빅데이터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자연	식품영양학과	—	100% (1,000점)		
예체능	실용음악학과				

※ 수시모집 최종 충원합격자 발표 이후 미등록 인원이 발생할 경우 정시모집에서 이월하여 선발함

II. 전형일정

1. 수시모집

구분		일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2025. 09. 08.(월) ~ 09. 12.(금) 17:00까지	이메일(admission@gangseo.ac.kr) 또는 우편 접수	
서류제출		2025. 09. 24.(수) 18:00까지 (서류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함)	우편 제출 : (우) 07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강서대학교 입학관리과	
면접시험	신학과	2025. 10. 04.(토)	• 시험시간 및 장소는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025.09. 안내예정)	
	G2빅데이터경영학과 상담심리학과	2025. 10. 10.(금)		
	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2025. 10. 11.(토)		
실기시험	실용음악학과	2025. 10. 18.(토)		
최초합격	합격자 발표	2025. 11. 07.(금) 14:00	합격자 확인 :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 (admission.gangseo.ac.kr) 등록 : 입학홈페이지 합격자 조회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로 입금	
	최초합격자 등록 (예치금 납부)	2025. 12. 15.(월) ~ 12. 17.(수) 14:00		
충원합격	1차	발표		2025. 12. 17.(수) 20:00 ~ (결원 발생 시 지속적 충원발표)
		등록		2025. 12. 17.(수) 20:00 ~ (충원 발생 시 등록 개별안내)
	최종	발표		2025. 12. 23.(화) 18:00까지
		등록		2025. 12. 24.(수) 16:00까지
등록금 납부		2026. 02. 03.(화) ~ 02. 05.(목) 14:00까지		

2. 정시모집

구분		일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2025. 12. 29.(월) ~ 2025. 12. 31.(수) 17:00	이메일(admission@gangseo.ac.kr) 또는 우편 접수
서류제출		2026. 01. 07.(수) 18:00까지 (서류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함)	우편 제출 : (우) 07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강서대학교 입학관리과
면접시험	신학과	2026. 01. 16.(금)	시험시간 및 장소는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026.01. 안내예정)
	G2빅데이터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식품영양학과	2026. 01. 22.(목)	
실기시험	실용음악학과	2026. 01. 23.(금)	
최초합격	합격자 발표	2026. 02. 02.(월) 14:00이후	합격자 확인 :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 (admission.gangseo.ac.kr) 등록 : 입학홈페이지 합격자 조회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로 입금
	합격자 등록	2026. 02. 03.(화) ~ 02. 05.(목) 14:00까지	
충원합격	1차	발표	
		(결원 발생시 지속적 충원발표)	
	~	등록	
		(충원 발생시 등록 개별안내)	
	최종	발표	
		2026. 02. 12.(목) 18:00까지	
		등록	
		2026. 02. 13.(금) 16:00까지	

Ⅲ.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공통 유의 사항

1.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지원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음. 해당자의 경우 본교 입학관리과로 문의 바람
(관련근거 : 교육부 대입정책과-1083 (2020.02.20.))
2. 원서접수 후 제출하는 모든 발급서류는 2025.05.01.(목)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3. 제출기한은 수시모집은 2025. 09. 24.(수) 18:00까지, 우편제출은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함
정시모집은 2026. 01. 07.(수) 18:00까지, 우편제출은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함
4.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제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재외교육기관 확인서(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함
5.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함께 제출해야함
6.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1. 입학정원의 2% 이내의 모집 대상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가.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공통사항	1. 이수기간 : [학생]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 체류기간 : [학생] 학생이수기간의 3/4 이상 체류 [부모] 학생이수기간의 2/3 이상 체류 3.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영주교포의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이수기간 및 체류기간을 충족하는 자(6페이지 산정기준 참조)
국외근무자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국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이수기간 및 체류기간을 충족하는 자(6페이지 산정기준 참조)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이수기간 및 체류기간을 충족하는 자(6페이지 산정기준 참조)
기타 재외국민 (자영업, 현지회사근무, 국외선교활동, 국외과건교직원, 유학생, 외국유학연수자)의 자녀	*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이수기간 및 체류기간을 충족하는 자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 영주교포의 자녀 - 국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①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사진 2매부착)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학생) ⑥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⑦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⑧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⑨ 재외국민등록등본 (부모, 학생) ⑩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 현지회사근무, 국외선교 활동, 국외 파견 교직원, 유학생, 외국유학연수자)	①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사진 2매부착)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학생) ⑥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⑦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⑧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⑨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⑩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⑪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⑫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취업자 제출서류) ⑬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2. 정원제한이 없는 모집대상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 6, 7호)

가.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3급이상 취득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국제교육교류원”에서 모집함

나. 외국인 특별전형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①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사진 2매부착)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⑥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⑦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⑧ 가족관계입증서류(전가족 호적등본 / 중국은 호구부 사본) ⑨ 한국어능력 인증서류 3급 이상 성적 증명서(TOPIK) ⑩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⑪ 재정보증서류 - 본인 또는 부모의 학비부담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US \$15,000이상 은행잔고증명서(1개월이상 예치) - 재정보증인의 학비부담 가)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나) 재정보증인의 US \$15,000이상 은행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다)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북한이탈주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③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학력확인서(교육감이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IV. 외국인 학생 장학금

1. 신입생 : 장학금 50만원 지급
2. 재학생 : 교내장학금 지급 규정 및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 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나.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 다. 직전학기 예배 F가 아닐 것
 - 라. 정규학기(8학기 이내 등록생)

평점평균	A (평점 3.0이상)	B (평점 2.5이상~3.0미만)	C (평점 2.0이상~2.5미만)
장학금 지급액	50만원	45만원	40만원

V. 인정기준 및 범위

1. 국외 영주·근무·체류기간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국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의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국외체류일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2. 재학기간 인정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재학기간 1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예 :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 외국고등학교의 경우 고교 졸업학년인 3학년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제에 준하여 해당국 학제의 12학년(영국학제는 13학년)을 의미하며, 각 해당국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졸업(예정)자의 재학기간은 2026. 02. 28.까지 인정함.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 조기졸업, 월반, 중복학기 및 외국의 학제 차이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여부는 대학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3. 외국학교 인정기준

-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정규학교이어야 함(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다만, 부모 거주(근무)국의 지역·종교·체제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제3국 수학인정서를 지원자가 작성하며 증빙자료(재외공관장 확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유아(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4.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여부는 대학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VI.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2.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함
3.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제출시 「아포스티유협약」(2007.07.14)에 따라 해당 영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가입국 지원자는 한국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국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전용상담전화 (02-2100-7500) 또는 영사콜센터(02-3210-0404)로도 문의할 수 있음)

VII. 전형별 안내사항

1. 면접시험

구 분	내 용
모집단위	신학과, G2빅데이터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식품영양학과
평가내용	① 본교 인재상 부합정도 ② 지원한 전공 관심도 ③ 인성·가치관 ④ 학업의지 등
평가방법	면접예상 질문에 기반한 구술면접 시험을 실시 (면접위원3인, 수험생1인)
평가지간	5분 이내

2. 실기시험

모집단위	실기종목	실기내용	유의사항
실용음악학과	보컬	- 자유곡 1곡 가창 (장르와 스타일에 제한 없음, 자작곡 가능)	- 자유곡 연주는 암보 연주를 원칙으로 함 - 기타, 베이스 연주자는 본인 이펙터 사용 가능 - 드럼 연주자는 본인 페달 사용 가능
	기악	- 자유곡 1곡 연주 (장르와 스타일에 제한 없음, 자작곡 가능)	- 반주용 MR 및 악보는 원서접수 후 사전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함 - 반주자는 수험생이 동반하여야 함 -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음
	작곡	* ①,② 중 택1. ① 자유곡 1곡 연주 (장르와 스타일에 제한 없음, 자작곡 가능) ② 자작곡 1곡 (mp3파일) 제출 및 질의응답	- 자유곡 연주는 암보 연주를 원칙으로 함 - 자작곡 제출 선택 시 mp3 파일 사전제출 (미디 작업물 혹은 연주녹음파일)

※ 면접/실기시험 주의사항

- 면접/실기내용 관련한 사항은 모집시기별 입학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택 1)과 수험표

VIII. 전형료 안내

1. 전형별 전형료

모집단위	전형료	비고
신학과, G2빅데이터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식품영양학과	54,000원	
실용음악학과	68,000원	

2. 전형료 환불기준

- 본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사에 미응시한 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의거하여 전형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 응시생의 착오로 인한 입학전형료 과납의 경우 : 과납한 금액 전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사고)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입학전형료 전액
 -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후 심의를 거쳐 본교가 인정한 자에 한함
 - 입학 전형 종료 후 입학전형 관련 손실·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방문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학전형 응시생에게 반환함(단, 전형료반환금액이 금융기관잔잔망 사용료미만일 경우 반환하지 않음)
 - ※ 은행계좌는 사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IX. 합격자 등록 및 유의사항

- 합격증 및 등록금고지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하여야 함
- 합격자에 대한 모든 공지사항은 개별통지하지 아니하고 본교 입학홈페이지의 공지사항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합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함. 등록기간 경과 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충원합격자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통지하므로 연락처 기재오류 및 변경으로 인하여 연락두절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등록한 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2026. 02. 13.(금) 16:00까지 '합격포기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 * 입학홈페이지((admission.gangseo.ac.kr)) -> [합격포기신청] 클릭 후 '등록포기신청서' 작성
 - > 입학관리과에서 확인 후 환불처리까지 진행됨
- 환불기준 및 금액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환불함
- 본교가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 최종등록자(외국인 유학생)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될 예정임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에서 정함

X. 기타 유의사항

- 이중국적 여부는 지원자격 기준에 제한받지 않음
- 원서접수 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격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학원서 허위기재 및 서류변조, 성적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연락처 오기제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